

의안
번호

39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전문위원 강 영 숙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경수현 의원 외 21명

나. 의안번호 : 제390호

다. 제출일자 : 2024. 11. 06.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2. 제안이유

-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의 우선돌봄아동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또한 노후화된 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침에 따라 이용대상 개정(안 제6조)
- 나. 센터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7조)
- 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기능을 신설(안 제10조)
- 라. 오타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10조~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08. ~ 2024. 11. 12.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여 아동복지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현황 > (2024.10.31.현재)

○ 시설현황

구 분	계	구립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단체	개인
시설수	23	3	8	6	3	3

- 이용아동 : 현원 724명 (미취학 4명, 초등 529명, 중등 126명, 고등 65명)
- 종사자수 : 77명
- 운영내용 : 방과후 아동의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등 프로그램
- 2024예산 : 4,788,710천원(국 1,005,277 시 2,313,331 구 1,470,102)

□ 주요내용

- **안 제6조(이용의 대상)**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1)에 따른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서인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의 우선돌봄아동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조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은 취약계층 등 돌봄을 필요로

1)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하는 특정한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지역사회내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를 우선 돌봄대상자로 명시하여 규정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u>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u> 1. <u>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u> 2. <u>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u> 3. <u>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u> 4. <u>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u> 5. <u>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u>	제6조(이용의 대상) (현행과 같음) ----- -- <u>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u>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8.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9.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10.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안 제7조(비용의 지원)**는 센터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항으로 제목을 “사업비의 지원”에서 “비용의 지원”으로 하여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제7호에 센터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신설하여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제7조(비용의 지원) ----- ----- -----. 1. ~ 6. (현행과 같음) 7. 센터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8. (현행 제7호와 같음)

- 안 제10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는 기존 조례상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기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하게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 위원의 인원 수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 -----. 1. 센터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 기준 및 심사 4. 센터 사업의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한다</u>.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센터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u>2명</u> 2. ~ 7. (생략) ④ • ⑤ (생략)	<u>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u> ② ----- ----- ----- ----- <u>선출한다</u>. ③ ----- ----- ----- -----. 1. ----- <u>1명</u>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배사항이 없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현황

○ 구립 3개소(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연번	시 설 명	행정동	주소	운영주체
1	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길음1동	서경로6길 70	정인교회
2	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석관동	한천로79길 14-14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3	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종암동	종암로19길 18	종암 중앙교회

○ 민간 20개소

연번	시 설 명	행정동	주소	운영주체
1	마가렛지역아동센터	성북동	성북로23길 22-13	재단법인 천주교사랑의씨튼수녀회
2	마고네지역아동센터	성북동	성북로10길 6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3	꿈터지역아동센터	삼선동	삼선교로 54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유지재단
4	동소문행복한홈스쿨	동선동	아리랑로7길 11	행복한아이 사회적협동조합
5	삼성지역아동센터	돈암1동	동소문로34길 24 304호 305호	삼성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6	월곡지역아동센터	돈암1동	정릉로52길 22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7	큰나무학교지역아동센터	안암동	보문로30가길 41-6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
8	꿈나래지역아동센터	정릉1동	정릉로 282 3층	대한예수교장로회 정릉교회
9	사랑지역아동센터	정릉3동	솔샘로 25	사랑비전스쿨 사회적협동조합
10	성모의집지역아동센터	정릉4동	보국문로38길 25-2	재단법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11	성광지역아동센터	정릉4동	보국문로16길 87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
12	시습지역아동센터	정릉4동	보국문로16가길 43-13	사회적협동조합 호학시인
13	아낌없이주는나무 지역아동센터	종암동	월곡로5길 39	개인
14	목자지역아동센터	월곡1동	종암로36길 53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자교회
15	밤골아이네지역아동센터	월곡1동	화랑로1길 26-3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성혈홍승수녀회
16	장위희망지역아동센터	장위1동	장위로15길 48	장위희망사회적협동조합
17	다솔지역아동센터	장위1동	장월로 89-10	작은문화공동체 다솔
18	비전트리지역아동센터	장위2동	장월로 28	비전트리 사회적협동조합
19	장위지역아동센터 밀알학교	장위2동	돌곶이로 157 4층	개인
20	푸른하늘지역아동센터	석관동	화랑로38길21	개인